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과 정책과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국회에서 정년연장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4월 30일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사적연금시장에 많은 수요변화가 예상됨. 개인연금시장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50대 연령층의 가입 수요 확대와 이로 인한 적립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소득주기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상품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퇴직연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DC형 가입니즈 및 DC형 통산기능 확대, DB·DC형 병행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향후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대규모 중간정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정년연장에 대비하여 향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임금피크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거나 중간정산 일시금의 연금계좌 자동이전 장치 도입, 캐쉬밸런스 플랜의 도입, 퇴직(연)금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시금과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차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정년연장 법률안의 개요

■ 국회는 정부가 1991년 정년연장 노력의무 부과 이후 22년만에 정년연장을 강제화한 고령자고용촉진 개정법률안¹⁾을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2017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정년을 연장하려는 사업장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해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허용함.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대체입법안, 2013.4.30)'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²⁾

나. 향후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

■ 2016년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53세³⁾의 평균 은퇴연령이 60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은퇴시장의 수요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년연장 강제화 시행이 각 사업장에서 명예퇴직 등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증가로 활용되어 근로소득기간 축소에 따른 노후준비 부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개인연금시장은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준비기간 연장으로 50대 연령층의 신규 가입수요와 적립금시장 규모 확대, 소득주기별 맞춤형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니즈 및 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활동 중단으로 연금수령 요건⁴⁾ 충족이 어려워 개인연금 가입이 곤란한 50대 연령층의 경우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준비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연령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소득기간의 연장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으로 이어져 개인연금 적립금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연령별 2~5년의 공백기간⁵⁾이 상존하므로 향후 근로소득 활동기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조정⁶⁾에 대비하여 소득활동기·정체기·단절기 등 소득주기별 및 연령대별 맞춤형 연금상품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소득 주기별 보험료 납입 수준과 연금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개인연금 상품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법 제19조~제19조의 2, 부칙 1·2.

3)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은퇴평균 연령이 만 53세로 나타남.

4) 신 연금저축의 연금수급 요건은 5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과 55세 이상 등임.

5) 정년연장에 따라 국민연금 공백기간이 축소될 예정.

6) 국민연금법 부칙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2012년까지: 60세, 2013년~2017년까지: 61세, 2018년~2022년까지: 62세, 2013년~2027년까지: 63세, 2028년~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

〈그림 1〉 정년연장에 따른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수급연령 출생년도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 이후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13. 3)으로 퇴직일시금은 신연금저축으로의 통산이 가능해져서 개인형 IRP(주식투자비율 40% 이하)보다 자산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신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수요 확대도 예상할 수 있음.

■ 향후 퇴직연금시장은 정년연장에 의한 신규가입 확대 효과보다는 사업장의 임금조정제도 실시에 따른 DC형 및 DB·DC형의 둘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과 적립금 통산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적립금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시장은 미가입 사업장의 신규가입 증가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및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 적용 등의 제도개선으로 시장의 성장세⁷⁾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향후 정년연장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금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조정기에 적합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규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일 기준이므로 향후 임금피크 등 임금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퇴직급여를 매년 정산하는 개념의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DB형제도 가입자의 DC형제도로의 적립금 통산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연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임금조정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일정 비율을 설정하여 병행하여 가입⁸⁾하려는 니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7) 2013년 1월 말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50%가 가입하였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67.3조 원으로 성장하였음.

■ 반면, 향후 사업장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일시금 인출과 소진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도 상존함.

- 현행 개정 근로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을 중간정산의 예외적인 사유⁹⁾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임금피크제도가 실시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대규모 중간정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중간정산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근로법 개정 이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일시금 인출의 대부분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된바 있음.¹⁰⁾
- 다만, 중간정산 등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통산하는 것이 가능함.

다. 향후 정책과제

■ 향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함.

■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추세에 따라 향후 사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연금재정 불안 등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될 예정임.
- 일본의 경우 2004년 정년연장 권고 이후 후생연금보험(소득비례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2013년 정년연장이 강제화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급연령도 상향조정됨.
- 따라서 사적연금에서도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의 노후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을 향후 정년연장 의무화와 세계적인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추세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할 수 있음.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참조.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참조.

10)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 70.8%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인출하여 대부분이 생활비, 자녀지원, 부채해결 등 생활자금으로 대부분을 소진함(자세한 내용은 류건식·이상우(2010, 9),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험연구원 참조).

■ 향후 임금피크제 실시에 의한 중간정산 일시금의 소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최소화 하거나 중간정산 일시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자동이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대규모 중간정산 시 일시금 인출과 소진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서는 현행 근퇴법상의 임금피크제를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신연금저축계좌로 자동이전’하는 노후소득 보존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금조정제도 실시에 적합한 DC형제도의 통산성 확대와 캐시밸런스 플랜(Cash Balance Plan)등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기존 퇴직금 또는 DB형제도 적립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통산제도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임금피크기에 적합한 DB·DC의 혼합형 연금제도인 캐시밸런스 플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캐시밸런스 플랜¹¹⁾은 미국에서 DB형과 DC형을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고안한 퇴직연금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시금 지급의 세제개선 필요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의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탈퇴 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 차이를 현행보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kiri**

11) 캐시밸런스 플랜은 기업이 미리 정해진 규약에 의해 가입자별 개인구좌를 만들어 정해진 기여를 행하고(DC형), 기업이 연금자산을 일괄해서 운용(DB형)하여 매년 기여액을 지표이율에 의해 적립하여 정해지는 방식임.